**프리랜서 계약서**

“링크드컬쳐”(이하 “회사”라고만 합니다)와 프리랜서 A(이하 “A”라고만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A”가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회사”와 “A”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정의

1. “프리랜서”란, “회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회사 프로젝트”이란, OOO 등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가 기획 및 개발 중인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용역의 수행 범위**

“A”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회사 프로젝트”에서의 \_\_\_\_\_\_\_\_\_\_\_\_\_\_\_\_\_\_\_\_\_ 제작

나.

다.

1. **용역 대금 및 지급 방법**
2. 제3조에서 정한 용역에 대한 대금은 금\_\_\_\_\_\_\_\_\_\_\_\_원으로 한다.
3. “회사”는 위 항에서의 대금을 “A”와 협의하여 정한 날짜에 “A”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4. **근무 장소**
5. “A”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이 계약상 목적인 용역을 수행한다.
6. 그 외 출퇴근 및 업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을 “A”가 자율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A”로부터 이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업무의 진행 상황 등을 전화, e-mail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업무 범위와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A”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한다.

# “A”의 권리와 의무

1. “A”는 “회사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 및 운영 등 “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조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A”는 “회사” 외 “A”가 제3자와 체결한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의무 또는 법령상 의무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다른 계약상 또는 법령상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A”가 부담한다.
3. **하자담보책임**
4. “A”가 제3조에 따라 완성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회사”가 “A”가 제3조에 따라 완성하여 “회사”에게 제공한 용역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A”는 “회사”에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1. “A”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위반, 계약해제 및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A”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계약의 위반, 계약해제 및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A”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회사”는 “A”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A”가 이 계약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설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의 지식재산권 및 know-how 등 모든 무형적 재산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 비밀준수의 의무

1. “A”는 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후에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A”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항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회사”와 “A”는 본 계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 의무 및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 이전할 수 없다.

# 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2주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불가항력

주주는 화재, 폭풍, 홍수, 지진, 사고, 전쟁, 반란, 폭동, 기타 민란, 전염병, 격리, 천재지변, 정부조치 등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본 계약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로 한다.
2. 본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 준거법 및 관할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회사”**

상호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A”**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